

# 마 산 향 도 선 사 회

51716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2 전화번호 (055)222-8122~5 팩스번호 (055)222-8126  
http://www.mspilot.co.kr/ 회 장 : 조 영 균 담당자 : 김정옥

문서번호 : 마도선 제2022-7호

시행일자 : 2022. 01. 26

수 신 : 선사 및 대리점

참 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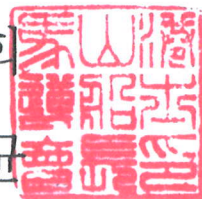
제 목 :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수리 알림(이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도운협 제494호(2022.01.25.) 관련입니다.
3. 마산항 도선구간 내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2022. 02. 01부터 적용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붙 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 끝.

마 산 향 도 선 사 회

회 장 조 영 균



"SAFER SHIPS, CLEANER SEAS"

#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수신 : 수신자 참조

참조 :

제목 :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수리 알림(이첩)

---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39(2022. 1. 24.) 관련입니다.

2.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에 대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수리되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 끝.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위원장 조용



수신자 : 각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위원장, 한국도선사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

---

간사 윤석배

시행 중앙도선운영 제 494 호 ( 2022. 1. 25. ) 접수 ( )

우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오성빌딩 10층) / www.kmpilot.or.kr

전화 (02)784-6022 전송 (02)783-0931 / kmpilot@kmpilot.or.kr



# 해양수산부



한국민뉴스

수신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경유)

제목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수리 알림

1. 중앙도운협 제493호('22. 1.10.)호 관련 입니다.
2. 「도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귀 협의회에서 제출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 수리 내역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주무관	이민욱	서기관	최문건	과장	전결 2022. 1. 24. 정규삼
협조자					
시행	항만운영과-539	(2022. 1. 24.)	접수		
우	320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772	팩스번호	044-200-5789	/ anton1o@korea.kr	/ 비공개(5)

# 도선료 변경사항 대비표

(변경 시행일 : 2022. 02. 01. 00:00 이후)

전체도선구(변경)

○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별표 1】 도선료(구 시행규칙 20조 관련)

도선구	도선구간	도선기본료	
		현행	변경(안)
마산항	1. 마산도선점과 마산항간(총톤수 5천톤 이상)	233,220원	265,870원
	2. 마산도선점과 진해항간(총톤수 5천톤 이상)	230,900원	263,230원
	3. 마산도선점과 고현항간(총톤수 5천톤 이상)	237,500원	270,750원
	4. 제1도선점과 마산항간(총톤수 5천톤 미만)	138,640원	158,050원
	5. 제1도선점과 진해항간(총톤수 5천톤 미만)	136,320원	155,400원
	6. 제1도선점과 고현항간(총톤수 5천톤 미만)	142,920원	162,930원
	7. 제2도선점과 마산항간	56,920원	64,890원
	8. 제3도선점과 진해항간	79,300원	90,400원
	9. 제4도선점과 고현항간	137,660원	156,930원
	10. 제5도선점과 옥포항간	134,160원	152,940원
	11. 제6도선점과 옥포항간	123,370원	140,640원
	12. 제7도선점과 삼천포항간	166,090원	189,340원
	13. 제8도선점과 지세포항간	239,110원	272,590원
	14. 제9도선점과 통영 LNG 생산기지간	311,950원	355,620원
	15. 마산항내에서의 이동	54,210원	61,800원
	16. 진해항내에서의 이동	79,300원	90,400원
	17. 고현항내에서의 이동	137,660원	156,930원
	18. 옥포항내에서의 이동	123,370원	140,640원
	19. 삼천포항내에서의 이동	166,090원	189,340원
	20. 지세포항내에서의 이동	143,180원	163,230원
	21. 통영 LNG 생산기지내에서의 이동	143,100원	163,130원
	22. 제1도선점과 통영 LNG 생산기지간(총톤수 5천톤 미만)	188,830원	215,270원
	23. 마산도선점과 통영 LNG 생산기지간(총톤수 5천톤 이상)	283,410원	323,090원
통영항	1. 제1도선점과 통영항간	61,140원	69,700원
	2. 통영항내에서의 이동	54,210원	61,800원

# 도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 1. 토요일 할증 적용(안)

○ 2022년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결의 협의 결과('22.1.6.)

-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토요일이 휴일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선료 신고사항의 공휴일 할증에 토요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적용키로 협의함

## 2. 신고 내용

○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제2조제1항제3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제2조(도선료의 할증)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 ① 도선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할증도선료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 다만, 공휴일의 야간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4. ~ 6. <생략>

② <생략>

## 3. 적용방법

○ 적용 예정일 : 2022. 02. 01. 00:00 이후 시행

○ 양 단체는 도선이용자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끝.

#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법적근거>**

건설교통부령 제65호(1996. 5. 13.)에 의거 도선료 및 도선선료가 법정 요금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부칙 제2항에서 기존 요금의 신고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를 보존 사용하고자 함

제1조(도선료)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 ①도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도선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의 도선료가 2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7만원의 최저도선료를 적용한다.<신설 2011. 8. 2. 신고 수리>

제2조(도선료의 할증)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①도선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할증도선료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1. 1. 11. 교통부령 643호>

1.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도선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도선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5할
2. 야간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5할
3.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 다만, 공휴일의 야간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및 위험물을 부린 후 가스를 제거하지 아니하거나 불활성 가스를 채우지 아니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의 2할을 할증한다.
5. 선거에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의 항내이동요금의 5할. 다만, 야간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항내이동요금의 7할을 가산한다.<1993. 2. 2. 신설 교통부령 제998호, 개정 2000. 11. 15. 변경신고 수리>
6. 선박을 안벽에 접안 또는 이안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의 항내이동요금의 3할을 가산한다.<1993. 2. 2. 신설 교통부령 제998호>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8. 6. 17. 변경신고 수리>

월 별 구 분	야간으로 보는 시간
12월부터 1월까지	17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
2월부터 3월까지	18시 00분부터 07시 00분까지
4월부터 5월까지	19시 00분부터 05시 30분까지
6월부터 7월까지	19시 30분부터 05시 30분까지
8월부터 9월까지	19시 00분부터 06시 00분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17시 30분부터 07시 00분까지

제3조(도선대기료, 도선취소료, 도선시간변경료 및 긴급도선료)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21조> ①도선사는 미리 약정한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상을 경과하여 대 기한 경우에는 그후 경과한 매1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마다 9만원 의 도선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부산 북항과 신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선 용선에 한하여 매 30분마다 9만원의 도선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 변경신고 수리>

②도선사는 미리 약정한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소급하여 각 지방도선운영협의회에 서 정한 일정한 시간 이내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요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선취소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9. 18. 2008. 12. 5. 변경신고 수리>

③도선사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4회 이상 도선시작시간을 변경 요청하여 도선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선시간 변경료로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 9. 18. 신고 수리>  
 ④도선사는 사전통보 없이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선장 또는 선박소유 자가 긴급도선을 요청하여 도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 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긴급도선료로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 9. 18. 신고 수 리>

제4조(도선선료)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26조> ①도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도선선료는 별표 2와 같다.

②공휴일의 도선선료는 별표 2에 규정된 도선선료에 3할을, 야간도선선료는 별표 2 에 규정된 도선선료에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의 야간에 도선선 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야간도선선료로 한다.<1993. 2. 2. 교통부령 제998호>  
 ③제2항의 경우에 야간의 시간 구분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